

水產稅制에 관한 研究

朱 尤 一

責任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南 秀 鉉

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I. 序 言

II. 水產稅制의 位置와 種類

III. 水產業의 租稅負擔과 減免

IV. 制度運營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V. 結 言

I. 序 言

租稅는 國民經濟生活과 불가분의 關係를 맺고 있다. 개인이나 法人, 營利企業의 所得, 財產의 所有, 財貨의 流通・去來에는 모두 租稅가 課徵되며 이 租稅는 國民 개개인의 所得 또는 財產에서 지불된다. 徵收者인 國家의 입장에서는 租稅는 여러 가지 國家 經濟・社會事業을 수행하기 위한 財政資金의 供給源으로서 중요한 役割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국민의 經濟生活을 저해하지 않고 社會進步의 단계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稅制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水產業의 경우,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漁家所得이 급속히 상승하여 1979년 말 현재 1,923 천 원에 이르고 있으나, 農家所得 2,227천 원에, 都市勞動者所得 2,630천 원에 비하면 아직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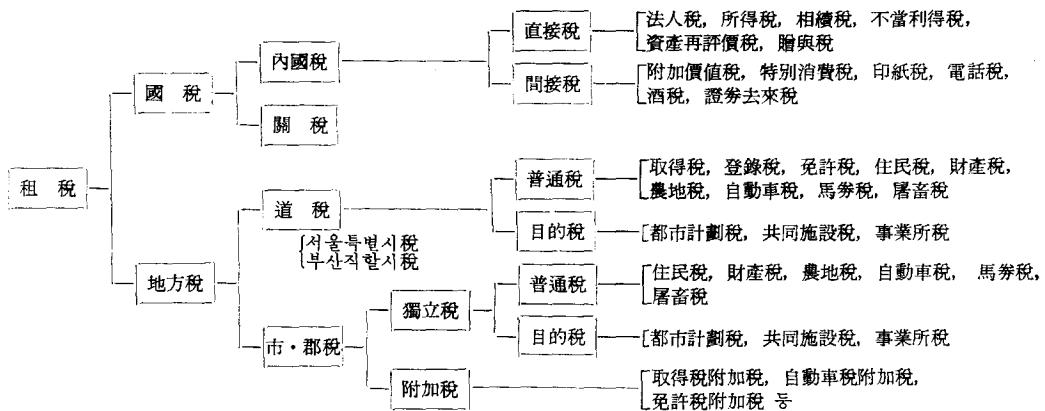
라는 형편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 數次에 걸친 經濟開發 5개년 計劃에 의한 전반적인 高度經濟成長에 힘입어 水產業도 어느 정도 成長해 왔다고 하나, 重化學工業 등 政策產業을 비롯한 기타 產業에 비해 상대적 低成長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水產業은 아직도 規模의 零細性, 所得의 低位性이라는 前近代的 產業構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本稿는 이와 같은 水產業의 產業構造上의 문제점과 投資効率優先順位에 따른 政策產業으로서의 未備點을 國家基本政策의 反影이라 할 수 있는 현행 稅法과 관련시켜 그 當爲性 與否를 논해보고, 현재 각 稅法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水產業 關聯條項을 정리, 분석하여 그 制度運用上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II. 水產稅制의 位置와 種類

현행 水產業의 租稅體系는 과거 李朝時代의 漁箭稅・漁船稅・鹽稅나 日帝時代의 漁業稅令에 의한 각종 租稅, 또 해방 이후 1961년 「國稅 및

圖 1 韓國의 租稅體系(1981.1.1 현재)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이 공포되기까지 하나의 독립적인 地方稅로 존립해 왔던 漁業稅 등과 같이 水產業에 관련된 租稅를 하나의 稅目으로 독립시켜 課稅徵收되는 것이 아니라, 他產業과 동일하게 현행 一般租稅體系에 準用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水產稅制는 一般租稅體系上의 각 稅目에 해당하는 租稅를 그 稅法이 규정하는 課稅標準, 稅率에 의해 納稅토록 되어 있다. 물론 稅法上 散在되어 있는 特惠規定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惠擇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租稅體系上으로는 거의 一般租稅體系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圖 1〉은 현행 우리 나라의 租稅體系로서 이 중 비교적 비중이 큰所得稅, 法人稅, 附加價值稅, 地方稅 등을 水產業의 경우와 관련시켜 稅率, 課稅標準, 納付對象 등 주요사항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水產業과 所得稅

水產業을 영위하는 자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따라 水產業으로부터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事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課

稅所得의 對象은 綜合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山林所得으로 나눌 수 있고 綜合所得에는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產所得・事業所得・勤勞所得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水產業에 있어서 利子所得은 農漁民特別預金利子에 대해 所得稅를 면제받고 있고, 配當所得도 地區別 水協 및 業種別 水協으로부터 받은 所得에 대해서는 所得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水產業者의 거의 대부분의 所得은 事業所得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課稅가 가장 중시된다. 事業所得에 속하는 水產業所得의 범위는 沿近海漁業, 遠洋漁業, 內水面漁業 및 養殖業과 水產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과 자기가 직접 포획한 魚類를 냉동, 판매하여 얻는 所得과 건조·염장 등 原始加工業에서 얻는 所得, 또 他人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原始加工業에서 발생한 所得을 포함한다.

水產業 所得金額은 장부를 비치, 記帳한 경우는 總收入에서 支出을 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장부 등에 의한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總收入에다 國稅廳長이 정한 所得標準率을 곱해 所得金額을 산출하여 여기서 所得控除(基礎控除, 配偶者控除, 부양가족控除, 장해자控除)를

한 금액을 課稅標準으로 삼는다. 여기서 國稅廳長이 정한 所得標準率이란 收入金額에 대한 일정율의 所得標準值를 말한다. 산출된 課稅標準에 基本稅率을 곱해 綜合所得算出稅額을 계산해내고 여기서 稅額控除(기장세액 控除, 재해손실세액 控除, 임시특별세액 控除)한 금액이 水產業者가 납부할 決定稅額이 되는 것이다.

1980年度分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과 稅率은 課稅標準이 연간 120만 원 이하일 때는 6%로 이때는 累進控除額은 없으며, 課稅標準이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360만 원까지는 90만 원 간격, 840만 원까지는 150만 원 간격으로 구성되어 각 段階마다 일정한 累進率을 적용하여 총 17단계로서 最高 6,000만 원 초과 시에는 62%로, 여기에 防衛稅 20%, 住民稅 7.5%를 적용하면 個人綜合所得稅의 擔稅率은 79.05%에 이른다.

2. 水產業과 法人稅

法人稅의 課稅對象은 內國法人的 事業所得・清算所得 및 外國法人的 各 事業年度所得으로 되어 있다. 水產業의 경우, 代表의인 法人組織으로서는 水協과 法人漁村契를 들 수 있고 최근 발달된 遠洋漁業 經營體가 대부분 法人形態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租稅減免規制法」上 水產業協同組合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水協과 漁村契는 法人稅가 면제되므로 현재 水產業에서의 法人稅 課稅對象은 대부분의 遠洋漁業體와 일부 沿近海漁業者와 養殖業者라 할 수 있다. 또 遠洋漁業의 경우는 租稅減免規制法의 「海外資源開發事業 投資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規定에 해당, 당해 수산자원보유국에서 租稅를 면제받은 분에 대해서는 法人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水產業에 있어서 法人稅는 他產業에 있어서의 比重보다 크지 않은 셈이다.

法人稅의 稅率은 非公開法人과 公開法人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非公開法人的 경우 課稅標準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25%이고, 5,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00만 원까지는 25%를 적용하고 그 超過分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또 公開法人的 경우 課稅標準이 5,000만 원 이하일 때 25%, 그 超過分에 대해서는 33%의 稅率을 적용하여 非公開法人에 비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3. 水產業과 附加價值稅

附加價值稅는 각 事業者가 모든 財貨나 用役을 생산하거나 分배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증가하는 價値인 附加價值를 기초로 각 공급단계의 事業者에게 분할하여 稅金을 징수하되, 그 징수된 負擔을 공급받는 자에게 轉嫁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最終消費者가 負擔을 지도록 하는 稅制이다. 附加價值稅의 課稅標準은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價額으로 하고 稅率은 100분의 13으로 하되 그 稅率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調整할 수 있다. 附加價值稅의 納付稅額은 賣出稅額에서 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水產業의 경우 沿近海漁業者는 附加價值稅法 第12條 1項에 의거 免稅事業者로 규정되어 水產物 販賣時 賣出稅額이 면제되고 있으며 遠洋漁業者는 同法 第11條 1項에 의거 零稅率 적용 事業者로 규정되어 遠洋漁船에 사용되는 財貨와 用役에 대해서 완전 면제되고 있다.

4. 水產業과 地方稅

地方稅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用을 위하여 그 地方構成員으로부터 징수하는 租稅로서 道稅와 市・郡稅로 나누어진다. 이 道稅와 市・郡稅

表 1 水產業關係 地方稅

稅種	課 稅 對 象	課 稅 標 準	稅 率
取 得 稅	1. 선박 기선·법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 를 불문한 모든 배	取得당시의 價額(年賦로 取得하는 경우에는 年賦 金額)	課稅標準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高級船 舶(파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非業務用 自家用)의 取得時は 위 稅率의 100분의 750
	2. 어업권 水產業法 또는 内水面開發促進法의 규 정에 의한 漁業權	"	1000분의 20
登 錄 稅	1. 船舶登記 및 20톤 미만의 船舶의 登錄	取得당시의 價額	○선박등기時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取得; 船舶價額 의 1000분의 5 2. 贈與·遺贈 기타 無償으로 인한 所有 權의 取得: " 1000분의 10 3. 1.2號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 1000분의 10 4. 1.2.3號 이외의 登記: 1件當 1,500원 ○20ton 未滿 船舶의 登錄; 선박의 신규등록 을 받을 때 每 10ton當 600원
	2. 漁業權	"	1. 漁業權의 移轉 (1) 相續: 每 1件當 600원 (2) 相繼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移轉: 每 1件當 3,600원 2. 漁業權의 持分의 移轉 (1) 相續: 每 1件當 300원 (2) 相繼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移轉: 每 1件當 1,800원 3. 漁業權設定을 제외한 第1號 및 第2 號 이외의 登錄: 每件當 900원
免 許 稅	1. 第2種 水產製造業·製冰業 2. 第3種 中央官署長에 의한 許可漁業 (潛水器漁業 除外) 3. 第4種 免許漁業 4. 第5種 地方長官에 의한 許可漁業(非 潛水器漁業(裡潛水業 除外))	人口 50萬 이상의 市	기 타 市
		第1種 27,000원 第2種 21,600 第3種 16,200 第4種 10,800 第5種 7,200 第6種 3,600	18,000원 13,500 9,000 6,000 3,000 1,500
住 民 稅	1. 均等割 市·郡내에 住所를 둔 個人, 法人 및 團體가 負擔하는 均等額의 住民稅	區 分	稅 額 個 人 法 人
		人口 500萬 이상의 市 人口 50萬 // 기타 市 郡	4,000원 2,500 1,500 800
	2. 所得割 市·郡에서 所得稅·法人稅·農地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個人과 法人	所得稅額 法人稅額 農地稅額	100분의 7.5
財 產 稅	1. 船舶 기선·법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 를 불문한 모든 배	財產價額	1. 高級 船舶: 1000분의 50 2. 그외 船舶: 1000분의 3

는 각각 普通稅와 目的稅로 나누어 지는데 普通稅는 財產의 取得, 登錄, 免許 등 주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項과 관련된 業務에 부과되는 租稅이며 目的稅는 地方自治團體의 特殊事業目的을 위해 특별히 부과되는 租稅이다. 예를 들면, 都市計劃稅는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費用을 충당하기 위해 都市計劃 區域 안에 있는 土地 또는 建築物을 課稅客體로 하여 그 所有主에게 부과하는 稅金이며 共同設施稅는 소방시설, 오물 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公共施設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해 그 惠擇을 받는 者에게 부과하는 稅金이다. 또, 事業所稅는 都市 등의 環境改善 및 整備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해진 區域內에 事務所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稅金인 것이다. 이와 같이 地方稅는 課稅者, 課稅對象, 課稅目的 등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稅目도 많다. (表 1)은 여러 地方稅法규정 중 水產業에 관련되는 부분을 골라 取得稅·登錄稅·免許稅·住民稅·財產稅 등 重要稅目에 대해 課稅對象, 課稅標準, 稅率別로 分류, 정리해 본 것이다.

III. 水產業의 租稅負擔과 減免

1. 水產業의 租稅負擔

水產業의 租稅負擔總額이나 漁業別·稅目別·經營形態別 租稅負擔額에 관한 公式統計가 없기에 本稿에서는 水協에서 조사한 「漁民 稅負擔調查 總集計表」의 1979년도분 數値를 이용, 沿近海漁業의 租稅負擔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漁民 稅負擔 調查 總集計表」에 나타난 1979년도 沿近海漁業 租稅負擔은 (表 2)와 같다. (表 2)를 보면 1979년 沿近海漁業部門의 總租稅負擔은

表 2 1979年度 沿近海漁業部門 租稅負擔

單位: 百만원

	全 產 業 (A)	沿近海漁業 (B)	對 (B/A) (%)
G N P	29,553,680	323,649 ¹⁾	1.10
總 租 稅 負 擔 額 ²⁾	5,184,986	27,492	0.53
國	614,679	5,630	0.92
法 人 稅	493,207	164	0.03
附加價值稅	1,088,675	15,238	1.40
特別消費稅	484,627	0.4	—
關 稅	732,294	30	0.004
防 衛 稅	631,904	1,103	0.17
其 他 ³⁾	679,500	3,723 ⁴⁾	0.55
地 方 稅	460,100	1,604	0.35

1) 本產業全體 GNP 542,380百萬원을 生產金額比例로 沿近海漁業에 按分

2) 過年度 收入金은 除外

3) 相續稅, 再評價稅, 不當利得稅, 酒稅, 電話稅, 證券去來稅를 포함

4) 全產業의 總 國稅負擔 총 其他稅目 679,500百萬원이 차지하는 比率을 沿近海漁業部門에 적용시켜 算出

資料: 氣經濟企劃院, 「주요經濟指標」, 1980.

韓國銀行, 「統計月報」, 1980.10.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80.

水協中央會, 「漁民稅負擔調查總集計表」, 1980.

27,492百萬 원으로 國民總租稅負擔 5,184,986百萬원의 0.53%에 해당한다. 여기서 沿近海漁業이란 近海漁業, 沿岸漁業, 定置漁業, 養殖漁業, 第3種 共同漁業을 의미하며 經營形態別로는 個人과 法人을 모두 포함한다. 稅目別 負擔額을 살펴보면 所得稅가 5,630百萬원으로 國民總租稅負擔의 0.92%, 法人稅가 164百萬원으로 0.03%, 附加價值稅가 15,238백만 원으로 1.40%, 關稅가 30백만 원으로 0.004%, 防衛稅가 1,103백만 원으로 0.17%, 地方稅가 1,604百萬원으로 0.35%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沿近海漁業의 기타 稅目 3,723백만 원은 全產業의 租稅負擔 내역에서 國稅總負擔 중 기타의 稅目 679,500백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근해 어업부문에도 적용시켜 산출한 數値이다. 租稅比重을 살펴보면, 附加價值稅와 所得稅가 全產業租稅負擔과 대비해 볼 때 1.40%, 0.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特別消費稅와 關稅는 거의 負擔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附加價值稅는 沿近

表 3 1979年 沿近海漁業의 事由別 租稅負擔

單位: 원

事由別區分	本 稅		防衛稅	住民稅
	稅 目	稅 額		
水產業所得	個人水產業所得	綜合所得稅	5,629,856	899,640
	法人水產業所得	法人稅	164,876	28,158
I. 不動產, 船舶 등 事業用 資產 의 所有	財產稅	272,944	53,780	
	都市計劃稅	9,787		
	共同施設稅	22,996		
	住民稅均等割	578	138	
	事業所稅	34,414		
	免許稅	262,012		
水產業經營을 위한 費用	II. 船體, 機關, 漁具修理費 (자본적지출제외)	特別消費稅 附加價值稅 關稅	6,111,416 35	3,022
	III. 漁業經營費	特別消費稅 附加價值稅 關稅 自動車稅 電話稅	6,469,554 148,507 98,678	39,841 65,300
事業用資產의 取得 (資本的支出포함)	取得稅	146,166		
	登錄稅	17,547	3,509	
	免許稅	13,123		
	關稅	30,024	9,353	
	特別消費稅	413	83	
	附加價值稅	2,656,753	12,945	
總	計	22,088,679	1,102,824	359,412

資料：水協中央會, 「漁民稅負擔調查集計表」, 1980.

海漁業 租稅負擔總額과 대비해 보면 55.4%의 높은 率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水產業에 있어 가장 중요한 稅目이라 할 수 있다.

한편, GNP 와 대비해 보면 沿近海漁業의 GNP 는 323,649백만 원으로 全產業 GNP 의 1.1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租稅負擔率 0.53%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서, 沿近海漁業의 GNP 는 水產業全體 GNP 542,380백만 원을 生產金額 비례로 연근해어업에 配分하여 구한 推定值이다.

1979년도 沿近海漁業의 租稅負擔을 좀더 세분하여 租稅源泉 즉 徵收事由別로 나누어 보면 <表 3>과 같다. 즉, 租稅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 또는 사유로서 첫째, 水產業所得을 들 수 있고

둘째, 現施設水準에서 水產業을 경영하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費用, 세째, 現施設水準을 초과하여 투자할 때 드는 資本的 支出 費用 등을 들 수 있다. 現施設水準에서의 經營費用에는 不動產, 船舶 등 事業用 資產을 소유함으로써 부담되는 租稅와 船體·機關·漁具 등을 수리할 때 구입하는 財貨, 用役에 따른 租稅, 기타 水產業을 영위하는데 드는 一般管理費, 販賣費에 따른 租稅負擔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事由別로 집계해 보면 水產業所得에서 7,081백만 원, 水產業經營을 위한 費用에 13,593백만 원, 事業用資產의 取得에서 2,877백만 원으로 단순한 水產業所得에 대한 租稅負擔보다 水產業經營을 위한 資產의 所有, 財貨·用役의

購入에 많은租稅負擔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間接稅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附加價值稅는前述한 바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沿近海漁業의租稅負擔은沿近海漁業이全產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그리 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產業全體의總負擔額 자체가 적다고 하여 그 產業構成員의租稅負擔이 적은 것은 아니므로, 水產業에 있어서도漁民들의租稅負擔은漁業人口,漁家所得 등과 관련시켜 고찰해야 한다.

<表 4>를 보면漁家口의絕對所得이農家口나都市勤勞者家口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1978, 1979년의漁家所得은 1,529천 원, 1,923천 원으로農家所得의 81.2%, 86.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漁家口의絕對的所得의低位는 상대적으로租稅負擔率을 가중시키게 되며, 따라서漁民의可處分所得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漁業人口에 따른 1인당租稅負擔 및 家口當租稅負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 生活指標로서, 「家計」를 하나의經濟單位로 볼 때家口當租稅負擔率의測定이漁民의現實生活에서租稅가 미치는負擔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表 5>는 1979년家口當租稅公課金負擔率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租稅公課金은物品의去來,流通에 부과시키는間接稅를 제외한租稅즉家計運營中租稅란명목으로 직접 납부하게 되는租稅와 각종公課金을 의미한다. 물론附加價值稅等間接稅의負擔이큰漁民側으로서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公式統計가 미비하므로 이資料를 원용하기로 한다.

<表 5>를 보면漁家口의租稅公課金負擔額은

表 4 年度別 家口當 所得對比

單位: 원

年 度	'75	'76	'77	'78	'79
都市勤勞者家口(A)	891	1,199	1,512	2,094	2,879
農 家 口(B)	873	1,156	1,433	1,884	2,227
漁 家 口(C)	847	1,059	1,391	1,529	1,923
對 比(C/B) (%)	97.0	91.6	97.1	81.2	86.3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0.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農水產部,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表 5 1979年 家口當 租稅公課金 負擔

單位: 원

	都 勤勞者家口	農 家 口	漁 家 口
所 得(A)	2,879,424	2,227,483	1,923,000
租 稅 公 課 金(B)	61,788	46,862	50,666*
負 擔 率(B/A) (%)	2.15	2.10	2.63

*水協中央會刊「漁業經營調查報告」의對象業種의租稅公課金을加重平均한 것임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0.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表 6 1979年 漁業別 租稅公課金과 經營體數

	租 稅 公 課 金	經 營 體 數
개 량식 대 모 망	103,444	194
소 대 망	53,060	143
水產廳長許可漁業	153,344	5,372
沿 岸 漁 業	7,443	13,006
합 계	—	18,715

資料: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50,666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水協中央會刊「漁業經營調查報告」의對象業種의租稅公課金을經營體數를加重值로하여 평균한 것으로 그내역은<表 6>과 같다. 여기서漁家の租稅公課金負擔額 50,666원은都市勤勞者家口보다는 적고農家口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負擔率로 보면 2.63%로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漁民에 대한租稅負擔이 아직漁家에 무거운負擔을 주고 있으며, 현 상태의租稅負擔은漁家の可處分所得을계속감소시켜,漁民의生活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수 있다.

2. 水產業의 租稅減免措置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水產業의 租稅負擔總額은 산업의 비중으로 보아 그리 큰 편은 아니나, 漁家所得의 絶對的 低位와 영세성 등으로 아직 漁家當 租稅負擔은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租稅分類상으로도 他產業과 동일한 稅源으로 간주하여 一般租稅體系에 의해 租稅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한 取扱으로 인해 생기는 不利點을 보전해 주는 措置로서, 「租稅減免規制法」 및 각 稅法에서 散發的으로 租稅減免의 惠擇을 주고 있다.

租稅減免規制法의 目的是 同法 第1條의 規定과 같이 「租稅의 減免에 관한 事項을 規制함으로써 課稅의 公平과 稅收의 확보를 기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量的 經濟成長 過程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產業部門에 대해 稅制上의 惠澤을 주어 그 產業을 보호하고 高度成長過程에서 야기된 產業의 構造的 矛盾을 축소 내지 시정하겠다는 意圖에서 制定된 것이라 볼 수 있다.

<表 7>은 沿近海漁業과 水協의 租稅減免內容을 담은 것으로 減免內容은 주로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沿近海漁業 선박에 사용하는 石油類와 島嶼

地方에서 自家發電用으로 사용하는 石油類에 대해서는 水協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경우 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值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石油類 중 輕油에 대해서는 7%의 特別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기타 重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水協으로부터 融資받을 때 그 融資金額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同용자를 받기 위해 어음거래 약정서 등 消費貸借證書에 첨부하는 印紙稅에 대한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地區別 水協, 業種別 水協, 그리고 漁村契가 취급하는 相互金融에 있어서도 500만 원 미만의 預託金에 대한 利子와 200만 원 미만의 出資金에 대한 配當에 대하여는 所得稅와 住民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水協에서 응자받을 때 제공하는 擔保物의 設定登記時同一人이 설정하는 抵當權設定金額이 160萬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登錄稅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沿近海漁業用 原資材 중 國내제작이 곤란한 物品의 輸入時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水協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水協 所有財產에 대한 取得稅, 財產稅, 登錄稅 등을 면제시켜 주고, 水協을 부가가치세 免稅團體로 규정하여, 漁民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水協의 附

表 7 沿近海漁民과 水協에 대한 租稅減免內容

減免對象	稅　　目	減　　免　　內　　容	法　　的　　根　　據
沿 近 海 漁 民	附加價值稅 및 特別消費稅 印紙稅 所得稅 및 住民稅 登錄稅 關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沿近海漁業用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協에서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 ○島嶼地方 自家發電用 石油類 ○水協에서 融資받는 500만 원 이하의 응자서류에 붙이는 印紙 ○상호금융에 있어 500만 원 미만 預託金의 利子와 200만 원 미만 出資金에 대한 配當 ○水協에서 融資받기 위해 提供한 擔保物에 대한 設定登記 ○國내製作이 곤란한 沿近海漁業用 原資材部分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관세법 제28조
水協 및 漁村契	法　人　稅 地　方　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水產業協同組合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水協 및 漁村契 ○업무용재산의 取得稅・財產稅 ○漁村契의 세마을 事業共同財產 ○免許稅, 登錄稅, 事業所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9. 10조

表 8 遠洋漁業關係 稟稅減免內容

項 目	內 容 要 話	法 的 根 據
1.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범인세 면제	○ 대상자원: 수산물 ○ 면세내용: 투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분에 한함	○ 조세 감면규제법 제 4 조의 10, 同法施行令 第24條의 2, 第 1 項 3號
2. 원양어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 원양어선원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월급여액 50만원 이하	○所得稅法 第5條 第4號(타) 同法施行令 第12條第1項 2號
3. 원양어선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유류 또는 선수품(외화회득용)	○부가가치세법 第11條 1項 1號 및 4號 同法施行令 第26條 1項 3號
4. 원양어업용 유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원양 어업선박에 사용하는 石油類	○ 特別消費稅法 第18條 1項 11號
5. 取得稅 非課稅	○ 원양 어업선박의 전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 지방세법 第108條 第4號
6. 財產稅 非課稅	○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원양어선)	○ 지방세법 第184條 1項 第7號
7. 資源開發產業에 대한 關稅減免	○ 國內製作 곤란한 施設機械類 및 基礎設備品 등 遠洋漁業 소요물품의 수입時 관세감면	○ 관세법 第28條의 2 1項 2號

加價値에 대한 稅負擔이 漁民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稟稅減免의 惠澤으로 水協은 漁民에 대한 환원사업, 지도사업, 배당금 지급 등으로 漁民에게 직접적인 惠澤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遠洋漁業關係의 稟稅減免內容을 보면 <表 8>과 같다.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투자한 사업에 대한 配當所得의 稟稅를 資源保有國에서 면제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월급여액 50만 원 이하의 원양어선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遠洋漁船用財貨, 用役에는 부가가치세 零細率을 적용하며, 원양어선의 取得, 所有時 取得稅, 財產稅가 면제되고 이외에도 遠洋漁船用油類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國內製作 곤란한 所要物品에 대한 關稅減免 등의 혜택이 있다.

IV. 制度 運用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현행 水產稅制는 一般租稅體系를 準用하나 「租

稅減免規制法」 등에 의한 減免惠澤을 받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財政支援은 되고 있는 셈이 되나, 稅法 自體나 制度運用上의 問題點도 많다. 현행 稅制運用上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改善方案을 모색해 본다.

1. 附加價值稅 免稅事業者로서의 不利益

現 水產業者는 附加價值稅法 第12條 第1項 第1號의 「가공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 畜產物, 水產物과 林產物을 포함한다)의 공급자」에 해당, 附加價值稅法上 免稅事業者로 규정되어 있다. 免稅事業者는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賣出稅額은 면제되지만 買入稅額은 면제되지 않는 不完全 免稅에 해당된다. 따라서 生產者인 漁民은 生產에 필요한 財貨,

表 9 一般·免稅·零細率 적용事業者の 相互比較

	一般課稅者 (一般事業者)	免稅事業者 (沿近海漁業者)	零細率適用 事業者 (遠洋漁業者)
1. 納 稅 義 務	있 음	없 음	없 음
2. 賣 出 稅 額	負 擔	免 除	免 除
3. 買 入 稅 額	負 擔	負 擔	負 擔
4. 買 入 稅 額 控 除 또는 淨 税	반 음	못 반 음	반 음

用役의 購入時 買入稅額을 면제받지 못하므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으며 대신 水產物을 공급 받는 最終消費者는 賣出稅額만큼 番 [값으로] 공급받는 셈이 되므로 이 制度는 漁民을 보호하기 위한 制度가 아니라 最終消費者를 보호하는 制度인 것이다. 또 免稅事業者의 경우, 施設投資 등의 費用에 포함된 購入稅額을 控除 또는 還給 받을 수 없기에 一般課稅事業者에 비해 不利하다. 즉, 一般課稅事業者는 購入稅額의 公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기에 施設投資費用에 間接稅負擔이 없으나, 免稅事業者는 施設投資時 부담한 施設投資購入稅額이 투자비용과 함께 固定資產에 함께 계상되므로 一般課稅 事業者보다 施設投資 購入稅額만큼 施設費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漁業經營을 더욱 악화시키고 규모증대를 위한 擴大再生產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 免稅制度를 修正補完하여 沿近海漁業用 資材 및 施設費와 水協의 施設投資費支出時 購入稅額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2. 所得稅 免稅點의 調整

현재 沿近海漁業과 遠洋漁業은 乘船者의 所得稅 免稅點이 상이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遠洋漁船에 몰리고 있어 船員需給上 차질을 빚고 있다. 沿近海漁業의 경우는 陸上勤勞者와 동일한 月 155,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면세받을 수 있는 대신 遠洋漁業에는 月 50만 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施設規模가 작은 沿近海漁船의 危險으로 인한 乘船 기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所得稅法 및 施行令을 개정하여 沿近海漁船員들에 대해서도 遠洋漁船員과 동일하게 月 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 勤勞所得稅를 면제시켜 주어야 타당할 것이다.

3. 水產業構造改善을 위한 稅制

현재 우리 나라 水產業의 特징은 所得의 低位性, 規模의 零細性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빈곤의 악순환으로 규모가 영세하기에 生産성이 저하되고 生產性의 低位로 인해 low所得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改善을 위해서는 水產業 자체의 構造改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現實的 方案으로서는 漁業協業化 또는 生產共同化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현행 水產稅制에는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충분한 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水產業의 構造上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 또는 固定化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현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法人・非法人漁村契에 대한 稅制上의 惠澤을 주어 協業經營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현재 法人漁村契는 租稅減免規制法 第4條에 의해 法人稅를 면제받고 있음)

4. 漁具購入의 固定資產 會計處理

현행 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事業年度 중의 經費에 대한 認定範圍가 業種別로 각기 다르다. 法人稅法 施行規則 第27條를 보면 漁具(設備別番號 3904)에 대해서 감가상각의 耐用年數를 2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現實上 操業 도중 漁具의 磨耗率 및 流失率이 매우 커 매년 替換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보면 매년 동일 數量의 漁具를 새로 구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消耗品과 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法人稅法에는 漁具에 대해 固定資產 會計處理方式에 의한 減價償却의 實施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稅金負擔이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水產業의 資

金壓迫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 漁具 購入費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消耗品으로 보아 損費處理하여야 할 것이다.

5. 租稅減免規制法의 適用期限 延長

현행 租稅減免規制法 18條에 의하면 「租稅減免은 이 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課稅期間 分期分 및 事業年度分 또는 그 기간 중에 製造場으로부터 반출하거나 保稅區域에서 引取하거나 기타 당해 事由가 발생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租稅減免의 効力時限이 漁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水協에 의하면 租稅減免 時效가 연장되지 아니할 경우에 漁民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稅負擔이 年間 1980년 기준 약 17,354 백만 원, 水協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漁民에게 전가되는 稅金이 약 7,113백만 원, 도합 24,467 백만 원이란 엄청난 額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도 어려운 漁業經營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이 法의 適用時限을 漁業資本形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1990년대까지는 延長措置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水產稅制는 一般租稅體系를 준용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水產業部門의 租稅負擔은 產業的 比重으로 대비해 보아, 國民總生產이나 財政投融資가 차지하고 있

는 비중에 비해 그리 과중한 편은 아니나, 漁家單位로 볼 때 絶對所得에 대한 租稅負擔은 都市勤勞者家口나 農家口보다 무거워 漁民의 可處分所得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改善을 위해서는 稅制上의 制度改善과 漁民所得增大方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현행 稅制面에서는 水產業의 產業的 役割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誘引措置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좀더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즉 租稅減免措置를 확대하고, 投資控除制度, 特別償却制度를 강화하여 漁民의 租稅負擔을 더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所得增大事業의 基本方案이라 할 수 있는 協業經營, 生產共同化 등을 이룬 經營體에 대해서는 稅制上 惠澤을 주어 水產業構造改善를 위한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며, 制度運用上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附加價值 免稅事業者로서의 不利益, 所得稅 免稅點의 不均衡, 損費의 會計處理上의 문제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타당한 改善方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仁台, “近代水產稅制에 관한 研究”, 『釜山水大 論文集』, 10輯, 1973. 6
- 金雄俊外, 「農業稅制에 관한 研究」,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6.
- 金基成, “農民의 農地稅 負擔 現況과 問題點”,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12
- 車耕權, 「租稅概論」, 博英社, 1971.
- _____, 「財政學原論」, 博英社, 1973.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0.
- _____, 「主要經濟指標」, 1980.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 _____, 「漁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 水協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 玄岩社, 「稅法」, 1979.
- 普文出版社, 「地方稅法關係法令集」, 1975.